

제26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 회의 (2021. 12. 10.)

---

**조례안·일반의안**  
**심사보고서**

---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



# 목 차

1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상 인용조문 등 일괄개정을 위한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5
3	거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	14
4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5	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0
6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6
7	거창군 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2
8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1
9	거창군 문화센터 무상 사용·수익허가 동의안 .....	59
10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64
11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70



#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10.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11. 25.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1. 11. 29.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0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2021. 12. 8.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감사청구 주민수 기준을 정하여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의 감사청구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위임 인용 조문 변경함(안 제1조·제2조)
  - 가) 「지방자치법」 제16조 ⇒ 「지방자치법」 제21조
- 2) 법령 위임범위에서 감사청구인 수 기준 변경(안 제2조)
  - 가) 기준 : 190명 ⇒ 150명
  - 나) 근거 :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종호]**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감사청구인 주민수 기준을 변경하여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의 감사청구 요건을 완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따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 임**
1.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규조문 대비표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연서 대상 주민수에 관하여”를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서”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란 150명을 말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연서대상 주민수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는 190명 이상이어야 한다.</p>	<p>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란 150명을 말한다.</p>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상 인용조문 등 일괄개정을 위한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10.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11. 25.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1. 11. 29.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0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2021. 12. 8.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시행 2022. 1. 13.)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조문과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른 관련 용어를 일괄개정하여 별도의 입법절차로 인한 비경제성·비능률성을 방지하고 제때 시행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조례에 인용된 조문 변경(안 제1조~제24조)
  - 가) 24개 조례
  - 나) 위임 조문 변경
  - 다) 「지방자치법」 전반

- 2)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25조~제29조)
- 가) 5개 조례
  - 나) 군수 ⇒ 군수와 의장
  - 다) 「지방자치법」 제103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중호]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조문변경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관련 용어 변경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에 따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상 인용조문 등 일괄개정을 위한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상 인용조문 등 일괄개정을 위한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의 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을 “「지방자치법」 제78조”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지방자치법」 제19조”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제2조(「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39조”를 “「지방자치법」 제47조”로 한다.

제3조(「거창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제8호”를 “법 제4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법 제47조제1항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법 제4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법 제4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10조 중 “법 제42조제1항”를 “법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2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로 한다.

제8조 중 “「지방자치법」 제26조”를 “「지방자치법」 제32조”로 한다.

**제5조(「거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를 “이 조례는”으로 한다.

**제6조(「거창군 반 설치조례」의 개정)** 거창군 반 설치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거창군 군청,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군청,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6조”를 “「지방자치법」 제9조”로 한다.

**제8조(「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를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로 한다.

**제9조(「거창군 공인조례」의 개정)** 거창군 공인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거창군 주민투표조례」의 개정)**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제4조의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5조제3항 각 호”로 한다.

**제11조(「거창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의 개정)** 거창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제12조(「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제13조(「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개정)** 거창군 반 설치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7조 중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4조(「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제15조(「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의 개정)**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6조, 같은 법 제13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의 개정)**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0조와 제91조”를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제103조”로 한다.

**제17조(「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4조·제45조·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제54조”를 “「지방자치법」제53조·제54조·제56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134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27조”를 “법 제142조”로 한다.

**제18조(「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를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로 한다.

제9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으로 한다.

**제19조(「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의 개정)**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2조”를 “「지방자치법」 제71조”로 한다.

**제20조(「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를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로 한다.

제7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으로 한다.

**제21조(「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부터 제116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로 “법 제117조와 제120조”를 “법 제131조와 제134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146조”를 “법 제163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104조제2항과 제3항”을 “법 제117조제2항·제3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9조”를 “법 제13조”로 “법 제41조제3항”을 “법 제49조제3항”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법 제41조제5항”을 “법 제49조제5항”으로 한다.

제9조의2 중 “법 제42조제2항 단서”를 “법 제51조제2항 단서”로 한다.

**제22조(「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의 개정)**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8조”를 “「지방자치법」 제46조”로 한다.

제7조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으로 한다.

**제23조(「거창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2조”를 “「지방자치법」 제51조”로 한다.

**제24조(「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를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로 한다.

제2조의2 중 “영 제33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로 한다.

**제25조(「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개정)**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거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를 “거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와 거창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거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를 “군수와 의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6호,

제19조제1항·제3항, 제23조제1항, 제2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제3호,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군수”를 “군수와 의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과장급 이상의 군 소속 공무원 6명”을 “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군수”를 “부군수와 거창군의회 부의장”으로 한다.

**제26조(「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의 개정)** 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조 제목 “(군수의 책무)”를 “(군수와 의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거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를 “거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와 거창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수”를 “군수와 의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중 “군수”를 “군수와 의장”으로 한다.

**제27조(「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개정)**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거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로 하고, 제3조제1항, 제5조제3항, 제6조제2호 중 “군수”를 “군수와 의장”으로 한다.

**제28조(「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거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를 “거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와 거창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제3항 중 “군수”를 “군수와 의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제2항제2호·제3항·제5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제9조제3항, 제11조, 제12조 중 “군수”를 “군수와 의장”으로 한다.



제29조(「거창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거창군수”를 “거창군수와 거창군의회 의장”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10.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11. 25.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1. 11. 29.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0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2021. 12. 8.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20조(2022. 1. 13. 시행)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1) 위임조례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2) 군수의 책무와 의견제출 제외 대상을 정함(안 제2조·제3조)
  - 가) 대상 :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한정
  - 나) 제외 :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3) 의견제출 방법, 의견서의 보완요구 등을 정함(안 제4조·제5조)
  - 가) 방법 : 주민이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한 의견서 작성·제출
  - 나) 보완요구 : 제출된 의견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 사항기간 표시
- 4) 의견의 검토 및 처리를 정함(안 제6조)
  - 가) 규칙의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된 의견서를 법제담당 부서와 협의 거쳐 검토
  - 나) 검토 결과를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 문서로 통보
- 5) 의견의 반영과 차별대우의 금지 등을 정함(안 제7조·제8조)
  - 가) 의견제출이 타당하면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
  - 나) 주민이 의견제출했다는 이유로 차별이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됨
- 6) 비밀 준수 의무 등을 정함(안 제9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종호]

- 「지방자치법」 제20조(2022. 1. 13. 시행)에서 위임한 거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권의 부여와 절차를 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상위법 위임에 따른 조례 제정으로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 향상과 주민 권익 보호가 기대됨에 따라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따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1. 거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 거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3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4조(의견제출 방법 등)**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한 의견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 참고자료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5조(의견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의견의 검토 및 처리)** ① 규칙의 주관부서(해당 규칙을 제정·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에 대하여 법제담당 부서와 협의를 거쳐 검토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담당 부서와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③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검토결과서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송에 든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7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제8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제출했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서

(앞쪽)

<b>의견제출인</b>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	성명	[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 표시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공동 의견제출	[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대표자 인원:      명
<b>의견</b> ※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		
<b>참고자료</b> ※ 필요한 경우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거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용

(뒤쪽)

※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수집 · 이용목적	의견제출 검토
보유기간	5년
수집 · 이용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 의견제출 검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80g/㎡]



[별지 제2호서식]

##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검토결과서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제출일자
제출의견	
주관부서 및 검토자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규칙명	(현행 규칙이 있을 경우 기재)
관련 법령 및 조례	
검토의견 ※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수용여부/사유 등 작성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거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거창군수

#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10.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11. 25.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1. 11. 29.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0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2021. 12. 8.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이규섭]

### 가. 제안이유

- 국가시책과 군 현안 시책 추진을 위한 기준인력 증원 반영 및 의회 인사권 독립 등에 따른 정원을 정비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 1) 정원의 총수 증원 15명 : 778명 ⇒ 793명(안 제25조)
  - 가) 집행기관의 정원 : 증12명(764명 ⇒ 776명)
  - 나)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증3명(14명 ⇒ 17명)
- 2)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4)
  - 가)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증14명
    - (1) 현행 : 699명(본청326, 의회11, 직속기관121, 사업소37, 읍43, 면161)

(2) 변경 : 713명(본청334, 의회14, 직속기관112,  
사업소37, 읍42, 면174)

나) 연구직(연구사) 정원 : 증1명

(1) 현행 : 6명(본청3, 직속기관2, 사업소1)

(2) 변경 : 7명(본청3, 직속기관3, 사업소1)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종호]**

- 거창군 기준인력 증원 반영과 의회 인사권 독립 등에 따른 정원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정원 정비를 통한 원활한 군정 운영을 위하여 조례 일부개정 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따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 임**
- 1.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신구조문 대비표**
  - 3. 비용추계서**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12조부터 제114조까지와 제120조”를 “「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와 제134조”로 한다.

제10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9조제1항 중 “법 제114조”를 “법 제127조”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법 제120조”를 “법 제134조”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78명”을 “79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64명”을 “776명”으로 하고 제2호 중 “14명”을 “17명”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10조·제13조·제16조·제19조·제22조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2조부터 제114조까지와 제120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와 제134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10조(설치)</b>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 「지역보건법」 제10조·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②·③ (생략)</p>	<p><b>제10조(설치)</b>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지역보건법」 제10조·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②·③ (현행과 같음)</p>
<p><b>제13조(설치)</b>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상수도와 하수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수도사업소를 둔다. ② (생략)</p>	<p><b>제13조(설치)</b> ① 법 제127조에 따라 상수도와 하수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수도사업소를 둔다. ② (현행과 같음)</p>
<p><b>제16조(설치)</b> ① 법 제114조에 따라 공공 체육시설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에 체육시설사업소를 둔다. ② (생략)</p>	<p><b>제16조(설치)</b> ① 법 제127조에 따라 공공 체육시설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에 체육시설사업소를 둔다. ② (현행과 같음)</p>
<p><b>제19조(설치)</b> ① 법 제114조에 따라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거창사건사업소를 둔다. ② (생략)</p>	<p><b>제19조(설치)</b> ① 법 제127조에 따라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거창사건사업소를 둔다. ② (현행과 같음)</p>
<p><b>제22조(읍·면)</b> ① 법 제120조에 따라 읍·면에 그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설치한다.</p>	<p><b>제22조(읍·면)</b> ① 법 제134조에 따라 읍·면에 그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설치한다.</p>

현 행	개 정 안
<p>② (생 략)</p> <p>제25조(정원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u>778명</u>이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 정원: <u>764명</u>  2. 의회사무기구 정원: <u>14명</u></p>	<p>② (생 략)</p> <p>제25조(정원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u>793명</u>이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 정원: <u>776명</u>  2. 의회사무기구 정원: <u>17명</u></p>

[별표 4]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27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소계	농업 기술센터	보건소				
총 계	793 778	358 350	17 14	149 157	75 72	74 85	41	43 44	185 172	
정무직	1	1								
일반직	소계	756 742	352 344	17 14	119 128	45 43	74 85	40	43 44	185 172
	4급	4	3		1		1			
	4~5급	1							1	
	5급	38	15	3	6	4	2	3		11
	6급 이하	713 699	334 326	14 11	112 121	41 39	71 82	37	42 43	174 161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1	1								
연구직 (연구사)	7 6	3		3 2	3 2		1			
지도직 (지도사)	28	1		27	27					



#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증원 15명

나. 관련조문: 제25조(정원의 총수)

###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계
군 비	634	634	634	634	634	3,170

### 3. 관련 의견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국가시책 및 군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기준인력 증원으로 현안업무 추진과 행정업무 효율에 기여하고자 함

##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2022년 인건비: 634백만원

작성자 행정과장 이 규 섭

# 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10.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11. 25.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1. 11. 29.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0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2021. 12. 8.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 가. 제안이유

- 거창군과 경상남도교육청의 업무협약으로 지정된 행복교육지구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지역교육공동체 마련에 이바지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목적 및 정의를 정함(안 제1조·제2조)
  - 가) 행복교육지구: 군과 교육청이 업무협약으로 지정한 지역
- 2) 교육장과 협력하여 매년 사업계획 수립(안 제3조)
- 3) 사업범위 및 비용분담을 정함(안 제4조)
  - 가)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활성화 지원 등

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군과 교육청의 업무협약에 따라 조정·분담

4) 재정 지원을 정함(안 제5조)

5) 학교 등과의 협력을 정함(안 제6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종호]**

- 거창군과 경상남도교육청의 업무협약으로 지정된 행복교육지구  
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  
하는 것으로
  
- 학교와 지역사회, 행정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거  
창군 교육 발전을 도모하고 행복교육지구의 체계적이고 효율  
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따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 임**
- 1. 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비용추계서**

## 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복교육지구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마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교육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마련을 위하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경상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업무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사업계획 수립)**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교육장과 협력하여 행복교육지구 교육협력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사업범위 및 비용분담)** ①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지원
2. 마을교육공동체(학교와 마을이 학생을 함께 키우고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와 마을, 교육청과 군,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운영 활성화 지원
3.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 및 교육체험활동 지원
4. 교육관련 지역 특화사업
5. 그 밖에 행복교육지구 교육협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업무협약에 따라 군과 교육청이 협의하여 조정·분담한다.

**제5조(재정 지원)**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예산 범위에서 그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학교 등과의 협력)** 군수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와 협의하여 학교 대상 사업을 계획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관련조문: 제4조(사업범위 및 비용분담), 제5조(재정 지원)

나. 비용발생 요인

- 1) 행복교육지구 교육협력 사업
- 2) 예산 범위에서 그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교육청 250백만원 별도 예산 편성

나. 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계
군비	250	250	250	250	250	1,250

##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1백만원
2. 마을교사 양성 운영: 61백만원
3. 마을학교 운영: 188백만원

작성자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2. 10.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11. 25.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1. 11. 29.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0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2021. 12. 8.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 가. 제안이유

- 아림예술제 지원을 위해 1996년에 설치된 아림예술제진흥기금의 존속기한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의 목적인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군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인용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등(안 제1조)
  - 가) 「지방자치법」 제142조 ⇒ 「지방자치법」 제159조
- 2)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4조)
  - 가) 2021년 12월 31일 ⇒ 2026년 12월 31일



- 나) 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제3항
- 3) 법령 중복·재기재 규정 삭제(안 제13조)
  - 가) 시행규칙 : 「지방자치법」 제23조 재기재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종호]**

- 거창군 향토문화예술 진흥과 군민화합을 위한 아림예술제의 추진을 위한 아림예술제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 아림예술제의 지속적인 개최와 발전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조례 일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따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 임**
- 1.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신구조문 대비표**
  - 3. 비용추계서**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림예술제”란 향토문화예술 진흥과 군민화합의 장이 되도록 아림예술제위원회(아림예술제의 문화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을 말한다)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행사를 말한다.

제4조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 142조에 따라 아림예술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 159조에 따라 아림예술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2조(정의)</u> ① “아림예술제”란 향토문화예술 진흥과 군민화합의 장이 되도록 아림예술제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행사를 말한다.</p> <p>② “아림예술제위원회(이하 “아림제위원회”라 한다)”란 아림예술제의 문화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을 말한다.</p>	<p><u>제2조(정의)</u> 이 조례에서 “아림예술제”란 향토문화예술 진흥과 군민화합의 장이 되도록 아림예술제위원회(아림예술제의 문화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을 말한다)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행사를 말한다.</p>
<p><u>제4조(기금의 존속기한)</u>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p><u>제4조(기금의 존속기한)</u>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p><u>제13조(시행규칙)</u>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lt;삭 제&gt;</p>

#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아림예술제 행사 등에 지원

나. 관련 조문: 제6조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아림예술제 행사
2. 그 밖의 아림예술제 진흥과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

###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계
세출	군비	5	5	5	5	5	25

3. 관련 의견: 다양한 지역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여 아림예술제 등을 활성화하고자 함

##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기금조성액: 500백만원
2. 이자수입 5백만원: 아림예술제 행사 등 지원

작성자: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 거창군 거창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2. 10.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11. 25.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1. 11. 29.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0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2021. 12. 8.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가. 제안이유

- 학교 교직원 및 학생, 마을 이장, 어린 자녀를 둔 가족 등에게 거창목재문화체험장의 체험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목재에 관한 지식 습득 및 목재의 중요성을 알려 목재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체험료 감경대상 확대함(안 제10조)
  - (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정
  - (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

2) 체험료 등 지원 신설함(안 제15조)

가) 범위 : 체험료, 재료비, 강사료 등, 나무장난감 무료대여

나) 대상 : 학교 소속 교직원 및 학생, 이장 및 반장, 기관·  
단체 임직원, 3세 이상 13세 이하 자녀와 주소를  
같이 두는 세대

3) 체험프로그램 체험료 기준 변경(안 별표 1)

가) 기준시간 : 4시간⇒3시간

나) 1시간 초과 시 추가 요금 최대한도 정함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종호]**

- 거창군 목재문화체험장의 체험료 감경 대상 확대 및 체험료 기준 변경을 통한 군민 체험기회 확대와 목재문화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 개정이 타당하며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따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 임**
- 1. 거창군 거창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신구조문 대비표**
  - 3. 비용추계서**



## 거창군 거창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거창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황산리 813-2번지”를 “송계로 487”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다”를 “있다. 다만, 감경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8.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9.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상 24세 미만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체험료 등 지원) ① 군수는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체험료, 재료비, 강사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군 소재 학교 등에 소속된 보육교직원·교직원 및 영유아·유아·학생
  - 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
  -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 라.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2. 군 지역 이장 및 반장
3. 군 소재 기관·단체 임직원
4. 3세 이상 13세 이하 자녀와 군에 주소를 같이 두는 세대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무장난감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위치)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거창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은 거창군 위천면 <u>황산리 813-2번지</u>에 둔다.</p> <p>제10조(체험료의 감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별표 1에 따른 단체요금으로 감경할 수 있다.</p> <p>1.~6.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설&gt;</u></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설&gt;</u></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설&gt;</u></p> <p>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설&gt;</u></p>	<p>제2조(위치)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거창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은 거창군 위천면 <u>송계로 487</u>에 둔다.</p> <p>제10조(체험료의 감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별표 1에 따른 단체요금으로 감경할 수 있다. <u>다만, 감경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한다.</u></p> <p>1.~6. (현행과 같음)</p> <p>7. 「<u>한부모가족지원법</u>」 제4조에 따른 <u>한부모가족</u></p> <p>8. 「<u>다문화가족지원법</u>」 제2조에 따른 <u>다문화가족</u></p> <p>9. <u>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 상 24세 미만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u></p> <p>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p> <p>제15조(체험료 등 지원) ① 군수는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체험료, 재료비, 강사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1. 다음 각 목의 군 소재 학교 등에 <u>소속된 보육교직원·교직원 및 영유아·유아·학생</u></p> <p style="padding-left: 20px;">가. 「<u>영유아보육법</u>」 제10조 각 호의 <u>어린이집</u></p> <p style="padding-left: 20px;">나. 「<u>유아교육법</u>」 제2조제2호에 따른 <u>유치원</u></p>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라.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2. 군 지역 이장 및 반장

3. 군 소재 기관·단체 임직원

4. 3세 이상 13세 이하 자녀와 군에 주소를 같이 두는 세대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무장난감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별표 1]

체험프로그램 체험료(제7조제2항 관련)

(단위: 원, 작품 1점당)

구분	체험시간	체험료		추가 요금	
		개인	단체 (20명 이상)		
대품 (기계작업)	3시간 기준	3,000	2,000	시간당 1,000원	최대 6,000원
중품 (공구작업)	3시간 기준	2,000	1,500		최대 4,000원
소품 (단순작업)	3시간 기준	1,000	500		최대 2,000원

비고

1. 정규프로그램 외의 특별프로그램 요청 시 체험료 별도 부과
2. 체험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조정
3. 체험프로그램에 필요한 각종 재료비는 별도 부과
4. 이용객 중 인솔자(부모 포함)는 무료 입장
5. 개인적인 목공작업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체험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금지

# 거창군 거창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 1) 체험료, 재료비, 강사료 등 지원: 교직원 및 학생, 이장반장, 기관·단체 임직원, 3세 이상 13세 이하 자녀를 둔 세대
- 2) 나무장난감 무료대여: 나무장난감 구입 및 관리비

#### 나. 관련 조문: 제15조(체험료 등 지원)

###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지원액 \ 연도	2022년도
군비	71

##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친환경 맞춤형 선도자 목공체험과정: 48백만원
2. 나무장난감 구입 및 관리: 23백만원

작성자: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10.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11. 25.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1. 11. 29.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0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2021. 12. 8.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가. 제안이유

- 노인복지기금과 자활기금에 대한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노인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그 설치목적은 달성한 양성평등기금은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편성·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안 제1조·제2조)
  - 가) 「지방자치법」 제142조 ⇒ 「지방자치법」 제159조
  -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2)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

가) 2021. 12. 31. ⇒ 2026. 12. 31.

나) 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3) 양성평등기금 폐지(안 제1조·제2조·제4조·제6조·제8조·제9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종호]**

- 노인복지기금과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양성평등기금은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편성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 거창군 노인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조례 일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따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 임**
- 1.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신규조문 대비표**
  - 3. 비용추계서**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42조, 「양성평등기본법」제42조제5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을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로 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종전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에 따른 자활기금

제3조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인복지기금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양성평등 기금”을 “노인복지기금”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제1항제3호”를 “제8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거창군”을 “군”으로 각각 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노인복지, 양성평등”을 “노인복지”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조의 「지방자치법」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제1조 및 제2조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 「양성평등기본법」제42조제5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에 따라 거창군의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창군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사회복지기금의 설치)</b>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금을 통합하여 거창군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노인복지기금</li> <li>2.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양성평등기금</li> <li>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에 따른 자활기금</li> </ol> <p><b>제3조(기금의 존속기한)</b>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p><b>제4조(기금의 재원)</b>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기금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양성평등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6. (생 략)</li> </ol> <p><b>제6조(양성평등계정의 용도)</b> ① 제8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양성평등계정(이하 “양성평등계정”이라 한다)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양성평등기본법」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li> <li>2. 「양성평등기본법」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 지원</li> <li>3.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지원</li> <li>4.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li> </ol>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에 따라 거창군의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창군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사회복지기금의 설치)</b>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금을 통합하여 거창군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노인복지기금</li> </ol> <p><b>&lt;삭 제&gt;</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에 따른 자활기금</li> </ol> <p><b>제3조(기금의 존속기한)</b>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p><b>제4조(기금의 재원)</b>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6. (현행과 같음)</li> </ol> <p><b>&lt;삭 제&gt;</b></p>

현 행	개 정 안
<p>한 조사·연구 지원</p> <p>5.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지도자 양성 지원</p> <p>6. 그 밖에 양성평등 발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군내 양성평등 관련 단체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지원은 제외한다.</p> <p><b>제7조(자활계정의 용도)</b> 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활계정(이하 “자활계정”이라 한다)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6.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나 거창군에 소재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으로 한다.</p> <p>③ (생략)</p> <p><b>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b>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별로 자금을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p> <p>1. 노인복지계정</p> <p>2. 양성평등계정</p> <p>3. 자활계정</p> <p>②~④ (생략)</p> <p><b>제9조(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b> ①~③ (생략)</p> <p>④ 민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p> <p>1. 노인 복지, 양성평등,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사업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명</p> <p>2. 사회복지 관련 단체의 대표자 3명</p> <p>⑤ (생략)</p> <p><b>제15조(시행규칙)</b>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b>제7조(자활계정의 용도)</b> 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활계정(이하 “자활계정”이라 한다)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6.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나 군에 소재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으로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b>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b>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별로 자금을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p> <p>1. 노인복지계정</p> <p><b>&lt;삭 제&gt;</b></p> <p>2. 자활계정</p> <p>②~④ (현행과 같음)</p> <p><b>제9조(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b> 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민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p> <p>1. 노인 복지,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사업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명</p> <p>2. 사회복지 관련 단체의 대표자 3명</p> <p>⑤ (현행과 같음)</p> <p><b>&lt;삭 제&gt;</b></p>

#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노인복지계정의 용도, 자활계정의 용도

나. 관련 조문: 제5조 및 제7조

###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계
군비	노인 복지 계정	10,800	10,800	10,800	10,800	10,800	54,000
	자활 계정	75,950	75,950	75,950	75,950	75,950	379,750

##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기금조성액: 2022년도 기금 2,414,958천원

2. 이자수입액: 86,750천원

가) 노인복지계정: 10,800천원

1)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사업 10,800천원

나) 자활계정: 75,950천원

1) 자립역량교육지원 19,950천원

2) 자활한마당참가지원 7,000천원

3)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 탈수급지원 4,000천원

4) 자활사업단, 자활기업 환경개선 5,000천원

5) 민간융자금 40,000천원 × 1개소=40,000천원

작성자: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 거창군 문화센터 무상 사용 · 수익허가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 12. 10.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11. 25.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1. 11. 29.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0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2021. 12. 8.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 가. 제안이유
  - (재)거창문화재단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문화공연 기획 및 운영, 거창한마당대축제 및 국제연극제 기획·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거창군에서 설립한 출연기관임
  - 거창군 문화센터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군민의 예술활동 공간 및 공공행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임
  - 대상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무상대여 사용하여 왔음

## 나. 주요내용

### 1)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개요

-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수남로 2181(김천리 216-5번지)
- 부 지 : 15,578㎡(거창문화센터 사용면적 : 6,564㎡)
- 연 면 적 : 4,363.27㎡
- 건축면적 : 2,447.10㎡
- 소 유 자 : 거창군
- 사 업 비 : 13,160백만원
- 사용·수익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간)
- 허가대상 : (재)거창문화재단(이사장 거창군수)

### 2)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세부내역

- 사용료 감면(면제) : 267,102,153원
  - 부지 : 3,166,473,600원 / 공시지가(482,400원)×면적(6,564㎡)
  - 건물 : 2,175,568,706원(시가표준액)
  - 사용료 산출 : 5,342,042,306원×50/1,000=267,102,153원
  - ※ 산출내역 : 부지평가액+ 건물평가액(시가표준액)×50/1,000(요율)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2호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 다. 참고사항

### 1) 추진경과

- 2017. 1. ~ 2021. 12. 31. 부동산 무상임대
- 2021. 11. :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 2) 향후계획

- 2021. 12. : (재)거창문화재단에서 사용·수익허가 신청
- 2021. 12. : 사용·수익허가(재산보존 책임, 원상태로 반환 등)
- 2022. 1. 1. ~ 2024. 12. 31. : 3년간 무상사용

### 3) 기대효과

- 거창문화재단에서 거창문화센터를 무상사용하여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군민의 예술활동 공간 및 공공행사의 편의를 제공

### 4)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5조
- 거창군 문화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 거창군 문화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
-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4조

### 5) 위치도 및 현황사진 : 붙임 참조

## 위치도 및 연왕사진



사진설명 : 거창읍 수남로 2181 위치도



사진설명 : 거창읍 수남로 2181 현장사진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종호]

-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따라 행정재산인 거창군 문화센터를 거창문화재단에 무상으로 사용토록 허가하고자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 무상 사용 허가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으로, 지방문화예술 진흥과 군민 예술활동공간 및 공공행사 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 거창군 문화센터가 군민 모두의 문화공간으로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문화예술을 주도하는 거창문화재단에 무상 사용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10.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11. 25.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1. 11. 29.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0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2021. 12. 8.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정현수]

### ㉠ 가조 수월리 일원 공원 조성사업

#### 1. 제안이유

- 당해 부지는 1995년 도시계획상 도시공원(수월공원)으로 결정된 수월리 495-5번지 인접 필지로서
- 가조 도심지의 점진적 확대, 향노화힐링랜드 개장 등 더 커진 가조권역의 실정에 맞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이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공원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임

## 2. 주요내용

### 가. 취득(또는 처분) 개요

- 위 치 :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495 등 3필지
- 토지면적 : 1,545m<sup>2</sup>(편입면적)
- 소 유 자 : 김\*규 등 2명
- 취득금액 : 463,500천원(m<sup>2</sup>당 300천원 / 가감정)

### 나. 취득(또는 처분)재산 세부내역

구분	재산 종별	재 산 소 재 지				기준 가격 (천원)	취득 시기	취득사유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편입				
계				1,545	1,545	137,225			
취득	토지	가조 수월 495	과	704	704	56,390	2022	수월리 일원 공 원 조성사업	김*규
취득	토지	가조 수월 495-6	과	660	660	62,898	2022	수월리 일원 공 원 조성사업	최*준
취득	토지	가조 수월 495-10	과	181	181	17,937	2022	수월리 일원 공 원 조성사업	최*준

※ 토지기준가격 = 공시지가 × 면적

### 다. 추진경과

- 2020. 5. : 수월공원 결정 부지(495-5) 매입 완료

### 라. 향후계획

- 2022. 1월 : 취득재산 감정평가 실시
- 2022. 1월 ~ 3월 : 토지보상 협의

### 마. 기대효과

- 가조권역 개발사업에 따른 공원시설 확보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 도시환경개선과 주민편익제공으로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

### 3. 관련법규 및 조례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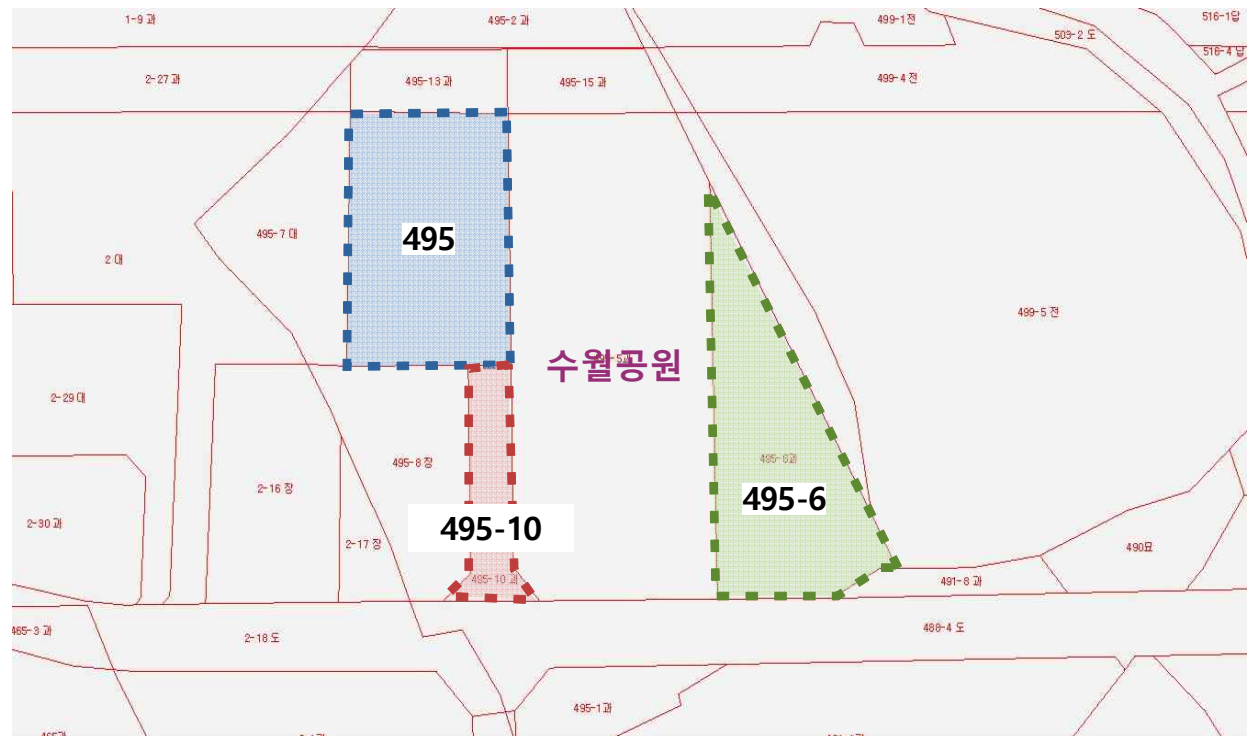
###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 붙임 참조

# 위치도 및 연왕사진

□ 위치도



사진설명 : 수월공원 위치도



사진설명 : 수월공원 일원 지적도

□ 현황사진



수월리 495



수월리 495-6



수월리 495-10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종호]

- 당해 부지는 1995년 도시계획상 도시공원(수월공원)으로 결정된 수월리 495-5번지에 인접한 3개의 필지로서 가조권역개발 사업에 따른 공원시설 부지로 협의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원시설 확보로 주민편익 제공과 도시이미지 경관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대상 토지 취득의 필요성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2. 10.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11. 25.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1. 11. 29.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0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2021. 12. 8.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 가. 제안이유

-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안정적으로 고용하여 국내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위탁기간(2021.1.1.~2022.12.31.) 중 수탁기관인 농업회사법인(주)NH유통의 해산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6조,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업 수행능력을 갖춘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사업명 :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 2) 위탁기간 : 2022. 2. 1. ~ 2023. 12. 31.
- 3) 위탁대상 사무 : 여성결혼이민자 채용 및 관리

- 여성결혼이민자 상시고용 : 연간 5~10명
- 근무조건 : 근로기준법 준수
- 근무내용 : 결혼이주여성 능력에 따라 다양한 업무 수행
- 월 급여 : 1인당 월 근로임금 50만원 이내 채용 장려금 지급  
(위탁금), 그 외 임금은 수탁기관 부담
- 4) 수탁기관 자격기준 : 4대 보험 가입하는 기업체 또는 법인
  - 연중 5~10명 정도의 여성결혼이민자 상시채용과 관리
- 5) 위탁방법 : 공개모집
- 6) 선정방법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다. 참고사항

- 1) 위탁 변경사유
  - 2021. 12. 31. 현재 수탁기관인 농업회사법인 (주)NH유통 해산 예정
    -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제5조(재위탁 제한)에 따라 법인 해산 시 위·수탁 협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2)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
  -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창출사업은 언어소통 문제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다문화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고 있음
  - 여성결혼이민자 능력에 맞는 다양한 사업으로 효율적인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기업체 또는 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

### 3) 관계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6조
- 「거창군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 4) 향후계획

- 2021. 12. :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접수
- 2022. 1.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별도계획 수립)
- 2022. 1. : 위·수탁 계약 체결 및 공증  
(위탁기간 : 2022. 2. 1. ~ 2023. 12. 31)

### 5) 예산조치 : 위탁운영비 연간 30,000천원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종호]

- 본 동의안은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수탁기관인 농업회사법인 (주)NH유통의 해산으로 인하여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사전 의회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 위탁기간은 2년이며, 여성결혼이민자 공개채용, 근로계약 체결, 상시고용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으로 여성결혼이민자 능력에 맞는 다양한 사업으로 효율적인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기업체 또는 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안정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부합되므로 전문지식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며
- 수탁기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